

## 주의사항

1. 본 수첩은 입찰시는 물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함.
2.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되며, 동법 제96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.
3. 본 수첩의 기재 내용을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인이 휴대하여서는 아니됨.

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21.8.31.>

## 건설업등록수첩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업종            | 철근 콘크리트<br>공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| 등록번호             | 서초-08<br>-10-01    |
| 주력분야          | 철근 콘크리트<br>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상호            | (주)코스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표자              | 박성혁                |
| 주된 영업소<br>소재지 |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<br>122, 4층 (전남동,<br>하우스도리) | 법인등록번호<br>(생년월일) | 110111<br>-0211641 |
| 국적<br>(소속국가명) | 대한민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등록일자             | 2008.01.14.        |

위 자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 
건설사업자임을 증명합니다.

2022년 01월 17일

동대문구청

